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Practice -Focusing on Contents and Evaluation of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

한정숙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ung-Sook Han(dresdenhan@yahoo.d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유기의 심각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국현실에서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분석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 비밀출산서비스는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는 16세가 된 후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출산서비스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및 신뢰성, 기관간의 연계와 협력, 상담의 질과 홍보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비밀출산 서비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실행기관의 설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상담과 홍보 부분에서 제언이 이루어졌다.

■ 중심어 : | 독일 | 비밀출산법 | 비밀출산 서비스 | 임신상담소 |

Abstract

In Korea, the infantile abandonment is increasing recently. In this situation,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German "confidential birth service"(vertrauliche Geburt)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Korean practi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onfidential birthservice" is centered on pregnancy counseling center. Through this service, pregnant women in crisis are assured of their anonymity and can safely bring baby into the world. After the child is 16 years old, they can lea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of their biological mother. These "confidential birth service" has received positive evaluation in terms of accessibility, sustainability and reliability of services, linkage and cooperation among agencies, quality of counseling and publicity. Implication for Korean practice include the provis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confidential birth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implementing agencies,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apacity of practitioners, as well as suggestions in the field of counseling and public relations

■ keyword : | Germany | Confidential Birth Act | Confidential Birth Service | Pregnancy Counseling Center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행 입양특례법은 무분별한 아동입양을 줄이며 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 입양을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존속해왔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아동 유기가 증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어 영아를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1]. 실제로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이 여성청소년 쉼터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아이를 출산한 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2] 그 수가 매우 적고 대다수 지역에 임신부들을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돌보는 상담시스템이 없다.

이렇듯 임신 여성을 돕는 시스템이 미흡한 가운데 김상용은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통해 임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동반하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3], 이선형은 베이비 박스 등 영아유기의 문제해결을 위해 미혼모 위기상담과 익명출산 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을 돕기 위해 비밀출산법을 제정하고 임신상담소를 통해 임신 여성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된다.

독일에서는 2000년 이후 베이비 박스가 증가하는 등 영아유기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왔고 2013년 비밀출산법이 제정되어 임신 여성과 아동 양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하고자 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비밀출산법은 임신상담소를 주된 개입기관으로 지정하여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에게 필요한 개입을 하계끔 돕고 있고 시행 3년이 지난 후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관리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5].

실제로 시행 후 3년이 지난 2017년에 비밀출산법과 비밀출산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여성 노인 가족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보고서는 비

밀출산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을 돕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고[6] 이 서비스를 통해 그 전까지 있었던 익명출산과 익명인도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7].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성공적인 비밀출산서비스의 사례를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의 실천현장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독일의 비밀출산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먼저 신동현과 엄주희는 독일의 베이비박스의 현황과 그 대안으로 등장한 비밀출산법 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신동현은 독일의 비밀출산제도가 베이비박스에 미친 영향과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으며[8], 엄주희는 독일 및 체코의 베이비박스와 그 입법적 해결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9]. 신옥주와 서종희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비밀출산법제의 관련성과 비밀출산법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10][11]. 이 중 신옥주는 베이비박스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비밀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안경희는 독일 비밀출산제도의 내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거쳐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밀출산제도의 도입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제도,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 보장, 임신 여성을 위한 상담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12]. 마지막으로 김상용은 독일의 비밀출산법제를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의 기본적 개정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더불어 미혼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폭넓은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3]. 이상의 독일 비밀출산제도 연구들을 살펴보면 독일 비밀출산법 및 관련 제도의 소개와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비밀출산법이 제정된 후 실제 비밀출산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중 실천현장의 사례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본고는 비밀출산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영역에서의 평가결과를 정리함으로써 독일 비밀출산 서비스 실천현장의 목소리를 실제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II. 비밀출산서비스의 내용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아동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베이비박스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동시에 베이비 박스는 아동의 유기를 조장하며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베이비박스와 함께 익명인도, 익명출산 등의 익명위탁제도¹⁾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독일 윤리위원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드디어 2013년 비밀출산법(SchHiAusbauG)이 제정되어 2014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비밀출산법은 임신 여성에 대한 지원강화와 비밀출산서비스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 임신감동법 등 출생과 관계된 기존의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고 신설사항을 도입하였다[13].

이러한 비밀출산법에 바탕을 둔 비밀출산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그들의 아이를 의료상의 처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홀로 출산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영아를 유기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을 예방하여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영아를 함께 돕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밀출산서비스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상담과 의료지원을 받으며 비밀리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자신의 신원을 밀봉, 비공개하여 자녀가 16세가 되기까지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14].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비밀출산서비스가 제공되는 절차와 비밀출산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비밀출산서비스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1. 비밀출산 서비스의 절차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는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임신상담소를 방문한 임신 여성은 철저한 비밀보장 하에 한 사람의 상담가와 연결되어 임신 전후로 상담과 보호 및 원조를 받게 된다. 상담은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여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므로 임신 여성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끔 강요되지 않는다[14].

전문적인 상담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상담가는 임신 여성에게 적합한 도움을 주어 여성이 스스로 해결책과 대안을 찾도록 촉진하며 상담은 두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 비밀출산법의 기초를 이루는 철학은 가능한 한 친생모와 아이가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친생모가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임신 여성이 이 도움을 원하지 않고 계속 익명으로 남아있기 원할 경우 비밀출산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계의 상담에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 단계: 임산부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비밀출산을 하기로 했을 경우 임신상담소는 그에 따르는 상담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출산 후의 후속조치까지도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임신상담소는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하게 된다.

먼저 임신 여성은 자신의 가명과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임신상담소는 임신 여성의 인적사항을 봉투에 밀봉하여 연방가족, 시민사회문제청(Bundesamt fue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에 보내는데 이를 혈통증명서(Herkunftsnachweis)라 부른다. 이 혈통증명서는 아이가 16세가 되기까지 보관되고 이후 친생모의 동의하에 아이만 열람할 수 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한 후 임신 여성은 임신상담소로부터 병원이나 조산원에 연결되며 이때부터 임신 여성은 그녀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명을 사용하게 되고 임신상담소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병원이나 조산원에 전달한다[14]. 이어서 임신상담소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관할 구역의 청소년 청에 출생예정일과 임신 여성의 가명을 알려주고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한다.

1) 익명인도: 자녀의 친생모 등이 아동보호시설의 직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아이를 맡기는 것, 익명출산: 임신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기관에서 출산하고 출산 후 아이가 시설에 인도되는 것

출산 후 병원과 조산원은 임신상담소에 아이의 출생 일과 출생 장소를 전달하고 아이의 이름과 엄마의 가명을 신분등록청에 보내 출생등록을 한다. 신분등록청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교부하고 비밀출산에 의한 출산의 보고를 가정법원에 하게 된다. 임신 여성이 임신 중 임신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후에 비밀출산의 의사를 비쳤을 경우에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출산 후 친생모의 친권은 정지되지만, 가정법원에서 완전한 입양결정이 나기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고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비밀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전히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임신상담소는 1년마다 상담기록을 기초로 비밀출산에 관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가족·시민사회문제청에 제출해야 한다[14]. 또한 비밀출산서비스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연방정부는 비밀출산 서비스의 효과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15].

2. 비밀출산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조치

비밀출산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여성들과 아울러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전화/ 인터넷 서비스, 대중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2.1 핫라인 전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

전국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상담 전화가 설치되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중앙 핫라인 전화 상담을 통해 임산부들은 사람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부담 없이 필요시 비밀출산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핫라인을 통하여 임산부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있는 임신상담소와 병원의 소개를 받기도 한다. 2017년 1월부터 전화 상담은 18개의 언어로 지원되며 통역을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화통역서비스도 인터넷사이트 www.geburt-vertraulich.de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15].

2.2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 “www.geburt-vertraulich.de”는

비밀출산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인터넷사이트는 독일 전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인된 임신상담소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여 전화서비스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내담자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독일어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이 서비스가 “임신한 그리고 많은 질문의”라는 사이트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핫라인 전화서비스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임산부들이 개인적인 상담에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15].

2.3 홍보

비밀출산서비스는 홍보작업을 통해 대상자와 대중에게 더 잘 알려지게 된다. 익명 상담홍보, 핫라인(전화서비스)홍보, 임산부들을 위한 포괄적인 도움과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여성들이 임신상담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임산부들이 수치심으로 인해 입양의 가능성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 캠페인은 여자 화장실이나 산부인과 대기실 같은 고립된 공간이나 또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공간인 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지를 배급하거나 시내버스나 장거리 교통수단에 홍보스티커나 홍보 광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여름 휴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15].

이 캠페인은 2014년 비밀출산법이 발효되면서 시작되었고 연방정부는 이를 출판물과 프로젝트를 통해 보완한다. 연방가족·시민사회문제청은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에 없는 임신-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여성 건강을 위한 의사협회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주제로 천여 번의 교육을 하였다. 출판물로는 2016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행한 “관점의 변화 입양”이라는 잡지가 전 독일의 청소년청, 입양 중재 기관, 복지단체 등에 배포되었다. 매거진 발행의 목적은 입양을 보내는 친생부모에 대한 대중의 인식개선을 도

모하는 것이다. 잡지의 내용은 입장을 보낸 친생부모와 입양아, 양부모의 이야기들을 엮은 인터뷰와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15].

III. 비밀출산서비스 평가의 내용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비밀출산서비스가 도입되고 3년이 지난 후 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평가를 통해 이 서비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서비스 대상들에게 수용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평가를 위한 자료는 임신상담소, 출산 지원기관, 청소년청, 신분등록청, 입양 중재 기관, 가정법원 등 비밀출산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2015년과 2016년에 수집되었고 각 목적에 따라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15]. 비밀출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 낮은 진입장벽

비밀출산서비스의 주된 개입기관은 임신상담소로 이곳에서 위기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제삼자에게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비밀출산법은 여성들이 임신상담소의 비밀출산 서비스를 복잡한 서류 및 행정절차 없이 가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로는 비밀출산서비스의 내용에서 소개한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이 있어 여성들이 비밀출산서비스에 다가가는 것을 쉽게 해 주고 있다. 임신부들이 비밀출산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산부인과의 소개를 통하거나 전화/인터넷 상담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임신상담소를 찾아가는 등으로 다양한데,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비밀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는 없지만,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비밀출산 서비스의 원조체제로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5].

2. 넓은 네트워크와 실무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비밀출산서비스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바탕에는 임신상담소의 넓은 네트워크와 유관기관 실무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있다. 전 독일 1600여 곳에 갈등상황에 처한 임신 여성들을 개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돕고 비밀출산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임신상담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더불어 임신상담소는 각 지역에 소재하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기관들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는 조정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했다[15]. 구체적으로 임신상담소는 병원, 조산소, 청소년청, 입양 중재 기관외에도 신분등록청이나 산부인과, 다른 상담기관이나 의료윤송업체들, 가정법원 더 나아가 비밀출산법의 도입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익명출산 실천현장과도 함께 일했다. 특히 임신상담소와 입양중개소 사이의 협력관계가 주목을 받았는데 몇몇의 경우에는 임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여성과 입양중개 기관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이 여성과 입양을 한 양부모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15].

불분명한 점이나 문제들은 몇몇 작은 경우 또는 부수적으로 관련된 관계자들(예를 들면 병원 윤송 인력이나 시간제 인력)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실무자들은 잘 대처하여 임신부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대부분의 임신상담소는 현장에서 장기간 비밀출산사례가 없을 때도 비밀출산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준비가 협력파트너들에게서 잊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이러한 역량은 규칙적인 네트워크 모임과 실무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종합적으로 비밀출산 제도의 실행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계자들의 훌륭한 협력과 실행력 덕분에 대부분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15].

3. 서비스의 지속성

비밀출산서비스는 이전에 존재했던 영아 익명 인도(익명출산, 베이비박스, 익명인도)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확실한 대안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밀출산법

에서 규정하는 임신부들을 위한 지원은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처럼 기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지속해서 제공되었다. 이렇게 서비스가 지속적해서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은 비밀출산법이라는 제도적인 틀과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인 기관네트워크와 인력, 그리고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온전히 담당하는 재정 안정성에 기인한다[15].

4. 서비스의 신뢰성

비밀출산법에서 규정한 비밀출산서비스가 실제 현장에 잘 정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낸 배경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아울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깔려있다.

4.1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신뢰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밀출산을 위한 상담의 질이다. 상담의 높은 질을 통한 신뢰를 얻기 위해 독일 정부는 먼저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펴 낸 “비밀출산을 위한 임신상담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은 상담시행 시 고려되어야 할 주제들,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역량 강화와 보수교육을 위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매뉴얼에 실려 있는 상담 인력 역량 강화 커리큘럼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어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15]. 또한, 전화 상담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은 여성 전문인들로 구성된 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특별히 행해지는 교육내용에는 비밀출산을 위한 법률적인 규정이나 임신상담소의 업무방식 등의 전문적인 주제와 대상자에 적합한 상담(위기상황에서의 상담, 쉬운 용어 상담, 상담에서의 다문화 감수성)내용들이 다루어진다. 상담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가 슈퍼비전이나 사례보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이 상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15].

4.2 체계적인 기록과 보고시스템

비밀출산을 위한 임신부 상담과 케어 이외에도 비밀

출산법은 기록과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 33조에 의하면 상담 인력은 비밀출산에 관한 모든 상담내용을 임신부의 익명처리하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기록에는 각각의 상담절차와 혈통증명서의 교부와 송부내용이 실려 있다. 이 기록은 매년 작성되어 해당 관청을 거쳐 연방가족, 시민사회문제청으로 보내진다[15].

기록시스템은 전화 서비스에도 갖춰져 있어 전화콘택트 수, 시간, 상담의 길이, 상담 중 발생한 문제, 상담의 내용,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 등의 내용이 저장, 보관된다. 이 기록시스템은 전화 서비스 사용의 정기적인 평가를 가능케 하고 이로써 전화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그런데 이 과정 중 임신부의 개인적인 정보가 수집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데[15]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점이 비밀출산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4.3 비밀보장의 준수

산모에게는 16년 동안 익명성이 보장된다. 산모는 비밀출산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가명을 쓰고 자신의 실제 이름을 임신상담소에 단 한번 알리는데 이에 대해 임신상담소의 상담가들은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닌다. 출생 신고서는 교부후 즉시 밀봉되고 연방가족 시민사회문제청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데이터의 보호와 기록에의 접근권도 제한된 인력에만 허용된다[15].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미성년인 임신부도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4 실무자를 위한 적절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비밀출산서비스가 현장에서 잘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건은 비밀출산법과 비밀출산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다행스럽게도 실무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이 정보를 얻는 가장 주된 통로는 임신상담소에 배포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자료들이었다. 이 자료들은 비밀출산법과 비밀출산의 절차 및 비밀출산 유관기관 연락처 명단을 포함하고 있어 실무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기관뿐 아니라 타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무자들이 비밀출산 실행

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15]. 특별히 전화 서비스는 상담 인력들을 위해 지식과 정보플랫폼으로서의 내부적인 데이터뱅크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뱅크는 임신부들과 비밀출산을 위한 계속된 연계와 실제적인 도움을 위한 주스데이터 뱅크(예를 들어 임신상담소와 병원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뱅크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이를 관리하는 관리처가 새롭게 설치되기도 하였다[15].

4.5 개개의 문제 상황에 따른 개별적인 상담

위기 임신 여성들을 위한 비밀출산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는 임신부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을 도움 기회를 얻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임신부와 상담가들 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상담소의 개별적인 상담은 산모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가능케 하여 상담을 받았던 산모의 3/4이 한 상담원에게 계속 상담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별적인 상담은 산모가 비밀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 비밀출산의 반이 넘는 사례에서 산모들은 아이의 출산 후에도 상담소와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 산모들은 또한 비밀출산과 입양 결정 후 다시 아이를 돌려받고 싶을 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반이 넘는 경우의 비밀출산 사례에서 임신상담소를 통해 산모에 관한 정보가 입양 중재 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1/3 정도의 사례에서 산모들은 임신상담소의 상담원에게 아이를 위한 메모나 물건을 남기기도 했다. 비밀출산법은 임신상담소의 상담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상담소와 산모들 간의 신뢰형성이 가능했으며 더 나아가 비밀출산서비스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었다[15].

4.6 성공적인 대중홍보

비밀출산서비스와 비밀출산법은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41%의 여성들이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36%의 여성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모든 여성이 비밀출산에 대해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81%의 여성들이 임신과 임신갈등상황에서 임신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여성 중 많은 수가 또한 어디서 어떻게 임신상담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는지 숙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중매체 및 인터넷과 캠페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큰 역할을 했다. 이 여성들은 또한 비밀출산서비스와 비밀출산법을 통해 아이와 산모의 이익이 균형 있게 조정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

IV. 결론

1. 요약

독일은 2014년 비밀출산서비스의 도입 후 현재까지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과 영아의 복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이 서비스의 도입후 3년이 지나 시행한 연방정부의 평가보고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위기상담전화와 인터넷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산모들이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고, 본격적인 산모들과의 상담이 넓은 범위에 걸쳐 제공되는 역량 있는 임신상담소의 상담가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출산이후의 후속조치도 여러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속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비밀출산서비스가 널리 알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었다. 또한 비밀출산서비스는 그 전까지 독일에 있어왔던 영아익명인도에 대한 합법적인 대안의 가능성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서비스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신 여성들이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아동의 욕구와 권리에 부응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2.1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본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독일은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을 돕는 방안으로 비밀출산법을 제정하여 3년째 비밀출산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미 다수의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지만[3][8-12] 저자도 한국에서 독일의 비밀출산법과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예를 보면 실무자들이 베이비박스 등 이전 익명인도 제도를 실시 할 때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실천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비밀출산법과 비밀출산서비스의 도입이후 재정적인 뒷받침은 물론 주무기관인 임신상담소를 통해 안정감을 가지고 실무에 임한다는 평가를 하였음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실제 2014년에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을 돕기 위해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부산에서 있었으나 베이비 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해당 관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16] 현존하는 극소수의 베이비박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더욱이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곤란한 처지에 놓인 임신부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현재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17]. 이 법안은 곤경에 처한 임신부들이 산전부터 산후까지 익명으로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임신부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2.2 실행기관의 설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더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따른 실천현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 비밀출산서비스의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독일의 임신상담소가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아직 한국에는 임신상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 위기임신 여성을 돕는 기관들로 극소수의 여성청소년 쉼터와 베이비박스가 있으나 여성 청소년 쉼터의 경우 제한적인 기본적 서비스만

이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베이비박스의 경우에는 운영 초기 사용자가 아무런 인적접촉 없이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넣고 가도록 했으나 현재는 사용자들이 꼭 먼저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과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는 독일의 임신상담소의 경우처럼 산전부터 산후까지 체계적으로 산모를 돌보지 못하며 더구나 합법적인 시설물이 아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베이비박스 등 익명인도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신상담소를 주축으로 한 비밀출산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가 잘 정착한 것을 볼 때 한국에서 임신상담소와 같이 거점기능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설치하거나 현존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센터등을 거점상담소로 삼아 임신 여성의 제반 문제를 한 상담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윈스톱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18].

또한,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관계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이다. 독일의 경우를 볼 때 전 독일에 걸쳐 분포하는 임신상담소 네트워크와 입양기관, 병원, 조산원, 가정법원, 신분등록청등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비밀출산서비스의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신 여성의 출산 전후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는 많은 기관과 인력들이 함께 투입되는 서비스로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실제 한국의 청소년 한부모를 돕는 구청 및 주민센터의 경우 연계부재의 불편을 호소하는 한부모들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19].

2.3 교육, 훈련과 자료제공을 통한 실무자 역량강화

이뿐만이 아니라 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독일의 노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독일 정부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교육, 훈련하고 있고 임신상담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청, 병원, 조산소들의 실무자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

고에서 기술하였듯이 실무자들은 실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과 정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한다. 상담 시에 바로 쓰일 수 있게끔 행동요령을 간략히 기술한 실무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실제 사례를 다루어 보면서 받는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각 유관기관들에게 특화된 정보와 유인물, 타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주소들을 배포하여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특히 전화 서비스의 경우 임신부들을 돕기 위한 임신상담소와 병원 등의 주소 데이터 뱅크를 갖고 있어 임신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8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다문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2.4 상담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에게 인터넷과 전화 상담을 통해 임신상담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후 임신 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한 사람의 상담원이 임신 여성을 출산 전후의 모든 단계에 동행하여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임신부의 익명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포함한 임신부들에게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는 점, 양육이나 비밀출산이냐의 결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을 돕는 상담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청소년 헬피콜과 같은 전화 상담 채널이 있는데 이곳에 미혼모 전담인력을 두어 임신 관련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19] 임신상담소와 같은 기관은 아직 없지만, 위기에 처한 임신부를 상담하는 기관에서 임신부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전담상담사를 두어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을 보살피는 것과 이 모든 과정에 익명성의 보호와 비밀보장,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통해 임신부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5 홍보 및 교육

한편 비밀출산법은 비밀출산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전화 핫라인, 인터넷 상담, 안내서를 통한 홍보 등 비밀출산제도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에 처한 임신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관련된 가임기 여성들이 비밀출산서비스에 대해 숙지하게 된 점, 비밀출산서비스와 비밀출산법을 담은 출판물을 발행하여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점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밀출산이라는 테마가 민감한 부분이어서 홍보와 교육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쉬쉬하는 것보다는 독일의 경우처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현명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적욕구를 음성적으로 표출하여 미혼모 내지 한부모가 되는 일이 많고 실제 한국의 경우 대다수 미혼모가 10대 청소년들인 것을 볼 때[19] 적극적인 성교육과 홍보는 예방과 혹 이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접근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전체 대중들을 대상으로 비밀출산법과 비밀출산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자세가 확립,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6 기타 제언

본고의 평가 부분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의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영아가 16세가 된 후 친생모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동과 산모의 이익이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15].

원칙적으로 비밀출산법은 아동이 16세가 된 후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친생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친생모와 아동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독일 가정법원은 쌍방의 이해관계를 건주어 판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특히 비밀출산 서비스가 시행되고 16년이 지난 2030년 이후 실제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친생부모들이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으로 비록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원이 아이에게 알려지는 것을 곤란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를 참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고려와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밀출산 서비스의 도입과는 별개로 영아를 입양 보내거나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친생부모가 키울 수 있게끔 돕는 정책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에도 들어있는 내용으로 산모가 상담을 받을 때 바로 비밀출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부모가정 지원법과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미진하다[19][20].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 방안만 보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되는 영아양육 급여가 너무 낮아[21] 한부모들이 영아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증액을 통한 양육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은 일반 대중들은 물론 의료인이나 주민 센터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서비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각 전문직에 대한 보수교육도 시급한 실정이다[22]. 이에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통해 한부모가정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철호, “입양특례법과 입양의 인권 문제,” 한국콘텐츠학회종합학술대회논문집, 2013.
- [2] 정희조, “장애아 키운 심정으로 버려진 아이들 돌보죠,” 스카이 데일리, 2017.11.21.기사.
- [3] 김상용,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pp.315-341, 2013.
- [4] 이선형, “베이비박스 아동실태 및 돌봄지원방안, 여성가족리포트, 제3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 [5] <http://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gesetz-zum-ausbau-der-hilfen-fuer-schwangere-und-zur-regelung-der-vertraulichen-geburt/80954>, 2018.1.16.
- [6] <http://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hilfe-fuer-schwangere-frauen-in-no-tsituationen-kommt-an/117428>, 2018.1.17.
- [7] Sommer, Ormig, and Karato, *Evaluation zu den Auswirkungen aller Massnahmen und Hilfsangebote, die auf Grund d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ue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ergriffen wurden*, 2017.
- [8] 신동현,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과 비밀출산법제,”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pp.1865-1890, 2015.
- [9] 엄주희,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 pp.91-124, 2016.
- [10] 신옥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48권, pp.331-367, 2014.
- [11] 서종희,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pp.79-128, 2014.
- [12] 안경희,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pp.1-42, 2017.
- [13] BMFSFJ, *Handreichung zur Qualifizierung von Beratungsfachkräften der Schwangerschafts(konflikt)beratung zur Umsetzung der vertraulichen Geburt*, 2015
- [14] BMFSFJ, *Die vertrauliche Geburt Informationen ueber 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ue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2015.
- [15] BMFSFJ,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den Auswirkungen aller Massnahmen und Hilfsangebote, die auf Grund der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ue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ergriffen wurden, 2017.

- [16] 정가영, “베이비 박스 강제철거 어려워 답답,” 베이비뉴스, 2014. 8. 5 기사
- [17] 주호영,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000162, 2016.6.9.
- [18] 안홍석, “임신미혼모 위한 원스톱 상담시스템 마련돼야,” 연합뉴스, 2017.5.11 기사.
- [19] 김지연,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청소년 정책리포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51권, 2014.
- [20] 이미정,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 젠더리뷰, pp.34-36, 2014.
- [21]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OptView.do>, 2018.4.25.
- [22] 성경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2016.

저 자 소 개

한 정 숙(Jung-Sook Han)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8년 11월 : 독일 쾰른대학교 석사(사회복지)
 - 2011년 4월 : 독일 드레스덴대학교 박사(아동복지)
 - 2012년 3월 ~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여성/가족복지